

제2관 무배당 동부화재 스마트 퇴직연금 이월보증형보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동부화재 스마트 퇴직연금 이월보증형보험

2. 사업경영의 지역

이 보험의 약관에 규정한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3. 보험종목

가. 주계약

- 이월보증형(이월보증기간 : 1년)

나. 부가하는 특약 : 무배당 동부화재 프로미 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4. 이월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 시 적용하는 이월은 1년 이월보증형 적용이율로 한다.

나.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월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bigcirc \text{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

- A2 : 회사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

주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주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월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 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제2호에서 정한 적용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라.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마.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5.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6.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납입기간

전기납

다.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년납

라. 수금방법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7. 해지환급금의 지급

이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단,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8. 청약서 등의 서식

- 가.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9.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은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재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한다.

11.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보험료 및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 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는 설정된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다.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나'항을 준용한다.
- 라.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에 대해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적용이율을 적용한다.
- 마.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에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90%」로 한다.

13. 기타 사항

이 보험의 내용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